

## 친권 정지 심판 및 친권 상실 심판

**Q** 아이의 부모가 일정한 직업을 가지지 않고, 자녀를 돌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이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A** 친권 정지나 친권 상실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친권 정지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권 정지란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 의한 친권 행사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함에 따라 자녀의 이익을 해칠 때, 관계자(자녀의 친족, 아동상담소장, 자녀 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2년 이내의 기간에 한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태가 더욱 심각한 경우에는 친권 상실 심판 청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친권 상실이란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 의한 친권 행사가 현저하게 곤란하거나 부적당함에 따라 자녀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칠 때, 관계자(자녀의 친족, 아동상담소장, 자녀 등)의 청구에 의해 그 친권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아동 학대에 대해서는 아동상담소에서 상담 및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상담소는 필요한 경우 아동을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양육 보호자 위탁 조치를 취하는 것이나 2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임시 보호를 하는 것에 대해 가정법원에 승인을 요청합니다.



## 아동 학대란?

아동 학대에는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아동 학대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 **신체적 학대**  
아동의 신체에 외상이 생기거나 생길 가능성이 있는 폭력을 가하는 것
- **성적 학대**  
아동에게 외설적인 행위를 하거나 아동으로 하여금 외설적인 행위를 시키는 것
- **방임**  
아동의 정상적인 심신 발달을 저해하는 현저한 감식 또는 장시간 방치, 보호자 이외의 동거인에 의한 학대의 방치, 기타 보호자로서의 감호를 현저하게 게을리하는 것
- **심리적 학대**  
아동에 대한 현저한 폭언 또는 현저하게 거절적인 대응, 아동이 동거하는 가정에서의 배우자에 대한 폭력, 기타 아동에게 현저한 심리적 외상을 가하는 언동을 하는 것

## 가정법원에서의 아동에 관한 주요 가사 사건과 관할 법원 일람표

사건의 종류	관할 법원	신청·청구할 수 있는 사람
양육비 청구 (중액·감액)	(조정)상대방 주소지의 가정법원 (심판)자녀 주소지의 가정법원 *	아버지 또는 어머니
면회 교류	(조정)상대방 주소지의 가정법원 (심판)자녀 주소지의 가정법원 *	아버지 또는 어머니
친권자 변경	(조정)상대방 주소지의 가정법원 (심판)자녀 주소지의 가정법원 *	자녀의 친족
미성년 후견인 선임	미성년 피후견인 주소지의 가정법원	미성년 피후견인 또는 그 친족, 기타 이해 관계인
양자 입양 허가	양자가 될 사람 주소지의 가정법원	양부모가 될 사람
특별 양자 입양	양부모가 될 사람 주소지의 가정법원	양부모가 될 사람
특별 양자 적격 확인 (특별 양자 입양과 동시 신청이 필요)	양부모가 될 사람 주소지의 가정법원	양부모가 될 사람
아동상담소장의 신청에 의한 특별 양자 적격 확인	아동 주소지의 가정법원	아동상담소장
친권 상실	자녀 주소지의 가정법원	자녀의 친족, 검사, 자녀,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 후견 감독인, 아동상담소장
친권 정지	자녀 주소지의 가정법원	자녀의 친족, 검사, 자녀,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 후견 감독인, 아동상담소장
시설 입소 승인(갱신)	아동 주소지의 가정법원	도도부현 지사(아동상담소장에게 위임)
계속적인 임시 보호 승인	아동 주소지의 가정법원	아동상담소장 또는 도도부현 지사

\*이 밖에 당사자가 합의해서 정하는 가정법원도 조정 신청 및 심판 청구를 하는 경우의 관할 법원이 됩니다.

### 상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은

○ 법적 문제 전반에 대한 문의는...

**일본사법지원센터(애칭: 법 테라스)**  
0570-078374 <http://www.houterasu.or.jp/>

○ 양육비에 대해서는... 가까운 **모자가정등취업·자립지원센터** 또는 **양육비상담지원센터**

**0120-965-419** 휴대전화나 PHS에서는 03-3980-4108 <http://www.youikuhi-soudan.jp/>

○ 양육 보호, 양자 입양 상담 등에 대해서는... **전국의 아동상담소 (전국 공통 다이얼) 189**

○ 아동 학대 상담·신고에 대해서는... **전국의 아동상담소 또는 시구정촌의 담당 창구**

○ 신청·청구를 하기 위한 수속, 필요 서류, 비용 등에 대해서는... **전국의 가정법원**

또는 **법원 웹사이트 <http://www.courts.go.jp/>**



## 가정법원에서의 자녀에 관한 수속

가정법원에서는 아동에 관한 다양한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수속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 가정법원

가정법원에서는 아동 복지의 관점에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적합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다양한 수속을 통해 문제 해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1 이혼에 따른 자녀 양육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 양육비의 청구

Q 이혼을 해서 아이의 친권자가 되었지만, 저에게는 아이를 양육할 만한 경제력이 없습니다. 전 배우자와는 아이의 양육비에 대해 협의를 했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A 양육비 지불에 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에 대해서는 민법으로 부모가 이혼할 때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정하도록 '자녀 감호에 대해 필요한 사항'의 구체적인 일례로서 명시되어 있습니다.(민법 제 766 조 제 1 항)

양육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우선 부모가 협의해서 결정하게 되지만, 협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양육비 조정을 신청해서 양육비 지불에 관한 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양육비가 결정된 후라도 그 후에 사정이 변경된 경우(수입이 줄어든 경우나 재혼한 경우, 자녀가 진학한 경우 등)에는 양육비 금액 변경(감액·증액)을 요구하는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면회 교류

Q 이혼해서 친권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도 제가 정기적으로 아이를 만날 수 있을까요?

A 면회 교류에 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거 또는 이혼한 후에 자녀를 양육·감호하지 않는 쪽 부모가 자녀와 면회 등을 하는 것을 면회 교류라고 하며, 이는 자녀의 성장에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면회 교류에 대해서는 민법에서 부모가 이혼할 때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정하도록 '자녀 감호에 대해 필요한 사항'의 구체적인 일례로서 명시되어 있습니다.(민법 제 766 조 제 1 항)

면회 교류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는 우선 부모가 협의해서 결정하게 되지만, 협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면회 교류 조정을 신청해서 면회 교류에 관한 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친권자 변경

Q 아이의 친권자인 전 배우자로부터 아이를 떠맡아서 제가 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친권자 변경을 요구하는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할 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가 합의해서 친권자를 정할 수 있지만, 이혼 후 자녀를 위해 친권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정법원에 친권자 변경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친권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조정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조정이 아니라 친권자 변경 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 2 부모(친권자)에 의한 자녀 양육이 불가능 또는 부적절한 경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 미성년 후견인의 선임

Q 언니 부부가 사망하고 남겨진 언니 부부 아이의 감호 양육과 재산 관리(보험금 청구 등)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미성년 후견인 선임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의 사망 등으로 자녀에 대해 친권을 행사할 사람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은 관계자(친족이나 아동상담소장 등)의 신청에 의해 미성년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미성년 후견인은 자녀의 법정 대리인으로 자녀의 감호 양육, 재산 관리,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 등을 담당합니다.

### 양자 입양의 허가

Q 아이의 아버지가 사망한 후 혼자서 아이를 키워 온 엄마인 제 조카가 병에 걸려 아이를 양육할 수 없게 되었고, 엄마의 작은아버지인 저와 제 처가 아이를 떠맡아서 양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이를 저희 부부의 자녀로서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양자 입양 허가를 요구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양자로 삼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가정법원은 아이의 연령과 아이가 처해 있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양자 입양을 허가할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비속(자녀나 손자 등)을 양자로 삼는 경우에는 허가를 요하지 않습니다.

또, 미성년 후견인이 미성년 피후견인을 양자로 삼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양자로 삼는 경우로 양부모가 될 사람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부가 함께 양부모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밖에, 특별 양자 입양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 특별 양자 입양 제도

특별 양자 입양 제도란 원칙적으로 15세 미만 아동의 이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할 때 아동과 그 친부모 측의 법률상 친족 관계를 소멸시키고 친부모 관계에 준하는 안정된 양부모자녀 관계를 가정법원이 성립시키는 입양 제도입니다. 따라서, 양부모가 될 사람은 배우자가 있고 원칙적으로 25세 이상인 사람으로 부부 공동으로 양자를 입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파양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